#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81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 강유정・박용갑・한준호

김준혁 • 문진석 • 박은정

김한규 • 양부남 • 박희승

위성락 · 김우영 · 진선미

김병기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 관련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기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자율적으로 비공식 서버나 모드(Mod)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대부분 게임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제작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여 게이머들의 창의적 활동은 보호하면서도 게임 유통질서도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행위"를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고죄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		
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지 등) 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9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			
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			
선하는 <u>행위</u>	<u>것을 업으로 하는 행</u>		
	위		
10.・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44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2. (생 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2		
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u>자</u> <u><단</u> <u>서 신설></u>

3. (생략)

②·③ (생 략)

제45조(벌칙) (생략)

<신 설>

-----자. <u>다만</u>, 제3 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 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 다.

- 3. (현행과 같음)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